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규정

1.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
- 직제 개정에 따라 기획처 ‘평가팀’을 ‘성과관리팀’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(제2조)

2. 개정 규정

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평가팀”을 각각 “성과관리팀”으로 한다.

부칙(2023. 5. 12. 개정)

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	신	개정사유및내용
제2조(평가주관부서) ① 자체평가 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처 평가팀으로 한다. ② 기획처 평가팀은 자체평가 실시 계획 수립부터 자체평가 전반을 총괄한다.	제2조(평가주관부서) ① ……성과관리팀…… ② ……성과관리팀…… 부칙(2023. 5. 12. 개정)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	*팀명 변경 반영 *팀명 변경 반영